
부산광역시 돌봄 기본 조례 제정안

2023. 4. 6.

돌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위원회

<제안 이유>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2번 이상 절대적인 돌봄 약자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하거나 공적·사회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반성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340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부산에서도 돌봄은 보편적·기본적 권리로 이해되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을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였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부산시를 포함한 행정기관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던 기관·시설을 일방적 폐쇄’함으로써 돌봄의 책임은 다시 개인·가족에게 넘겨져 그에 따른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였다.

팬데믹은 ‘돌봄 필요의 사회화, 돌봄 대응의 개별화’라는 부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을 포함한 이러한 사회적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학교를 통해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아동·청소년
- 전문적 돌봄지원이 절실했던 상황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
- 이용하고 있던 시설의 폐쇄로 갈 곳 없이 지냈던 노인
- 휴직과 실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전문가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
- 그 외에도 많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
- 생활시설 폐쇄 속에서 개인·가족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종사자(노동자)
-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개별 분야 강사 및 서비

스 제공자

- 돌봄서비스 단절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지원만을 유지해야 했던
관련 기관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 경험할 수 없으며, 다시 반복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돌봄 기본 조례를 위한 주민발안은 ‘돌봄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작’이다. 부산시민, 그리고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좋은 돌봄생활을 누리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민조례안을 발안한다.

<주요 내용>

1. 부산시민의 좋은 돌봄 생활을 위한 부산시장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함(제5조)
2. 돌봄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평적 관계를 보장하여 수준 높은 돌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제5조 1항, 제9조 2항)
3. 사회복지, 건강, 여성 가족, 교육, 노동 등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공급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제6조)
4. 부산시민 및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돌봄과 관련해 권리를 갖도록 하며,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제7조)
5. 적극적,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9조, 제11조)
6. 감염병 유행 등 돌봄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재난 대응을 하도록 함(제12조)
7.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운영을 위한 돌봄기금의 설치와 재원, 기금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4조)
8. 돌봄 기본계획 수립, 재난대응, 돌봄기금,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자문하는 돌봄정책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제15조~제24조, 26조)

9. 돌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돌봄 정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제25조)

<조례안 전문>

부산광역시 돌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과 관련한 부산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과 관련한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평적 관계를 보장하여 부산시민이 좋은 돌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시는 모든 부산시민이 돌봄권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부산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산시민의 돌봄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생애주기, 건강, 장애 등으로 인해 의존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돌봄이용자와 돌봄공급자 간 상호신뢰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2. “돌봄권”이란 모든 부산시민이 좋은 돌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돌봄이용자”란 돌봄에 대한 외부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돌봄공급자”란 돌봄이용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개인, 기관과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5. “돌봄공급기관”이란 사회복지·건강·여성 가족·교육·노동 등의 분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시설을 말한다.
6. “좋은 돌봄생활”이란 부산시민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

하여 돌봄이용자와 돌봄공급자 간 상호신뢰와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돌봄기금”이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재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시민과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사회복지·건강·여성 가족·교육·노동 등의 분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 시민의 좋은 돌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부산시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 파악과 적절한 지원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부산시민의 돌봄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부산시민의 돌봄생활에서 돌봄이용자와 돌봄공급자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4. 부산시민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건강, 여성 가족, 교육, 노동 등 관계부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산시민 돌봄권을 위한 부산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부산시민 돌봄권에 관한 사항

제6조(돌봄공급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 건강, 여성 가족, 교육, 노동 등 관련 분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은 부산시민의 좋은 돌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돌봄공급기관은 돌봄이 필요한 부산시민, 부산에 거주하는 외

국민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요청한 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기관에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돌봄공급기관은 돌봄을 제공하는 개인의 요구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부산시민 및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돌봄 이용방식과 돌봄 장소 등 모든 영역에서 돌봄과 관련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부산시민 및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돌봄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돌봄 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부산시민 및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시민의 돌봄권을 규정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돌봄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시 돌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복지·건강·여성 가족·교육·노동 등 분야별 돌봄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목표 및 실행방안
3. 사회복지·건강·여성 가족·교육·노동 등 분야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4. 돌봄이용자와 돌봄공급자 간 수평적 관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록 하는 방안

5. 돌봄이용자와 돌봄공급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 방안
6. 부산시 돌봄 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7. 돌봄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 조달 및 기금운용 방안
8.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돌봄권 보장을 위한 돌봄공급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10. 돌봄공급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돌봄서비스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부산시, 돌봄 기관, 언론, 시민단체 및 군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돌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9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 계획 수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는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과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재난 대응) ① 시장은 감염병 유행 등 돌봄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시민의 좋은 돌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유행 등 상황에서 돌봄공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산시민의 돌봄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재난 상황에서는 돌봄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긴급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때 돌봄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사회복지·건강·여성 가족·교육·노동 분야의 참여를 필수로 하되, 기타 영역은 시장이 결정한다.

④ 제15조의 돌봄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긴급협의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돌봄기금의 설치 및 자원) ① 시장은 제5조 시장의 책무와 제9조 기본계획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부산시 돌봄기금 조성에 동의하는 개인·법인 등의 기부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4조(돌봄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제5조와 제9조,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인권 보호 및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2.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인식개선, 홍보비, 인쇄비 등

② 제12조 2항에 따른 지원 및 보상과 관련한 사항 등

제15조(돌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돌봄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돌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 돌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심의·의결·자문에 관한 사항
2. 제10조 돌봄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한 심의·의결·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실태조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2조 재난 대응과 관련한 심의·의결·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의 부산광역시 돌봄기금과 관련한 심의·의결·자문에 관한 사항
6.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건강·여성 가족·교육·노동 등 돌봄 정책 관련 부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좋은 돌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돌봄서비스 제공환경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당연직을 포함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부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부산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건강·여성 가족·교육·노동 등 돌봄 관련 공급자
 4. 돌봄서비스 이용자
 5.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로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6. 돌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시민
 8. 그 밖에 돌봄 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돌봄 및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 돌봄 활동과 성과, 기금결산 심의 등을 위해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부산시 돌봄 정책 발전방안, 연계·협업 강화 방안, 기금 활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돌봄권 보장 분과위원회”는 돌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돌봄 정책의 조정 및 돌봄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 “돌봄기금운용심의 분과위원회”는 돌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는 제16조의 위원을 포함하며, 그 외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기타)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부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